

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2조(검사명령) 및 「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」(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-84호, 2019. 9. 26.)에 따라, 검사명령 기간 기간 종료 예정인 수입식품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지정 하였음을 공지 합니다.

2020년 4월 7일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변경 및 재지정 공지

1. 사유

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되어 검사 실시 중인 품목 중, 당초 검사 명령 기간이 종료 예정인 품목이 있어, 검사명령 해제 또는 재지정을 검토한 결과 재지정 하였음을 알리고자 함

2. 검토대상 품목

일련번호	검사명령 대상			
	대상국가	대상품목	검사항목	명령기간
제2019-2호 (최초, 제2018-1호)	모든 국가	히비스커스를 50%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	금속성이물	'18.4.23. ~'20.4.22.
제2019-1호	키르기스스탄, 러시아	능이버섯	방사능 (세슘, 요오드)	'19.4.23. ~'20.4.22.

3. 검토결과

☐ 검사명령 재지정

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		검사명령 기간		검토결과 (변경내용)
대상식품	검사항목	변경전	변경후	
히비스커스를 50%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의 제품 (모든 국가)	금속성이물	'18.4.23. ~'20.4.22.	'20.4.23. ~'21.4.22.	검사명령 재지정 (1년 연장)
능이버섯 (키르기스스탄, 러시아)	방사능 (세슘, 요오드)	'19.4.23. ~'20.4.22.	'20.4.23. ~'21.4.22.	

※ 「수입식품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」 제3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
홈페이지(<http://www.mfds.go.kr>)에 게재

4. 검사명령 상세내역 : 재지정 검사명령서 참조

※ 검사명령서 2부 별도 첨부